

청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3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5388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단54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3. 24.

판결 선고 2022. 4. 14.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단54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9. 3.

접수 제8753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을 제5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⑥ 원고는"부터 제6면 제15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만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착오는 위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K이 위 토지 중 일부 지분만 이전하여 가는 것처럼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데다가, 위 토지가 수차례 분할·합병되고 지분이 이전되는 등으로 그 현황 및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변경되어 원고로서는 그 면적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지분 중 얼마만큼이 피고에게 이전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착오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원고가 착오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K에 의하여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원고의 지분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위 매매계약서와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해 보거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담당했던 L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한 사항인데,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권

판사조희정

판사성찬용

별지